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자료	
보도	2016. 12. 2.(금) 조간	배포	2016. 11. 30.(수)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정성웅 선임국장(3145-8150), 박중수 팀장(3145-8136)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㉑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물한 번째 금융꿀팁으로,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㉑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김성규(31세, 가명)씨는 인터넷에서 무조건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하고 대출업자에게 대출상담을 받았음. 대출업자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김성규씨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대출업자의 권유대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결국, 작업대출로 의심받아 금융회사로부터 고발당하였음 ■ 가정주부 신금자(43세, 가명)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하여 300만원을 대출받았음.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
꿀 팁	<p>☞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을 기억하고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p> <p>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p> <p>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p>

②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투자위험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기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미등록 대부업체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http://s1332.fss.or.kr>)

*** 한국이지론 연락처.홈페이지 (☎1644-1110, <http://www.egloan.co.kr>)

④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대출광고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⑥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이는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⑦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 광고**입니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⑧ “○○○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이는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식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참조하여 회사의 경영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책임하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⑨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파인’내 금융회사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

⑩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금융 ××캐피탈”

이는 불법 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파인’내 금융회사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

1. 불법금융광고 신고·상담 방법

불법금융광고 피해신고·상담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번호 (내선번호 **3번**)로 연락하여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인터넷 URL 주소 및 해당 불법금융광고를 화면캡쳐한 증거자료를 함께 알려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

☞ 불법금융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URL주소와 증거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웹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9월말
통장매매	116	122	862	1,009	488
작업대출	-	102	470	420	242
미등록대출	48	55	346	509	374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16	28	251	212	151
신용카드현금화	40	20	167	9	14
불법 투자증개업체	725	1,785	880	387	150
합 계	945	2,112	2,976	2,546	1,419